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281호 2011. 9. 1(목)

고 시	
○ 사천시 고시 제2011- 96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사항 고시	2
○ 사천시 고시 제2011-100호 사천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	4
○ 사천시 고시 제2011-101호 공유수면매립 면허(협의·승인)사항 고시 ...	14
○ 사천시 고시 제2011-102호 공유수면매립 면허(협의·승인)사항 고시 ...	18
○ 사천시 고시 제2011-103호 공유수면매립 면허(협의·승인)사항 고시 ...	2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 · 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1-96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1. 8. 24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변경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1-10호(2011. 8. 11.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가. 성 명 : 사천시장(문화관광과장)
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- 삼천포대교공원내 공유수면에 수상무대(데크 플레이트)를 설치하여 친수공간 및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및 시민들의 편의도모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대방동 681-2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사항
 - 당 초
 - 데크 플레이트 설치 : [727㎡ (L=44m, B=17m)]
 - 변 경
 - 데크 플레이트 설치 : [1,218㎡ (L=39.8m, B=26.6m)]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3)
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일자 : 2011. 8. 24.
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조건

- 점용·사용 승인(변경)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, 시행하여야 합니다.
- 실시계획승인변경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4)

사천시 고시 제2011-100호

사천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고 시 일 : 2011. 9. 1
2. 장 소 : 사천시 홈페이지, 시 공보, 전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 게시판
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신설·변경(세부내역 별도조서 참조)

계	도로구간 신설	도로명 폐지 및 변경	도로구간 변경	비고
13	11	1	1	

4.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절차

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5)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민원지적과(☎055-831-2320~2323)으로
문의하시거나 새주소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2011. 9. 1.

사 천 시 장

사 전 시 예

제281호(6)

1.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조서(신설)

연번	도로명	유사 도로명	행정 구역	도로구간			위계	길이	폭	기초 간격	기초 번호	부여 사유	종류
				시점	종점	로							
1	용현로	용현1길 용현2길 용현3길 용현4길 용현5길	용현면	덕곡리 684번지	송저리 1313번지	로	1,450	24	20	1-405	신차로로, 용현면의 주상도 도로로, 용현면의 용현1길, 용현2길, 용현3길, 용현4길, 용현5길은 부여함	용현면	
2	용현1길	용현2길 용현3길 용현4길 용현5길	용현면	덕곡리 687번지	덕곡리 607번지	길	385	23	10	1-477	용현로로, 용현면의 용현1길, 용현2길, 용현3길, 용현4길, 용현5길은 부여함	용현면	
3	용현2길	용현1길 용현3길 용현4길 용현5길	용현면	덕곡리 611번지	덕곡리 708번지	길	495	17	10	1-489	용현로로, 용현면의 용현1길, 용현2길, 용현3길, 용현4길, 용현5길은 부여함	용현면	
4	용현3길	용현1길 용현2길 용현4길 용현5길	용현면	덕곡리 588번지	덕곡리 592번지	길	255	8	10	1-443	용현로로, 용현면의 용현1길, 용현2길, 용현3길, 용현4길, 용현5길은 부여함	용현면	
5	용현4길	용현1길 용현2길 용현3길 용현5길	용현면	덕곡리 580번지	송저리 1276번지	길	855	24	10	1-471	용현로로, 용현면의 용현1길, 용현2길, 용현3길, 용현4길, 용현5길은 부여함	용현면	
6	용현5길	용현1길 용현2길 용현3길 용현4길	용현면	송저리 1298번지	송저리 1294번지	길	105	8	10	1-421	용현로로, 용현면의 용현1길, 용현2길, 용현3길, 용현4길, 용현5길은 부여함	용현면	
7	대발당로	대발당1길 대발당2길 대발당3길 대발당4길 대발당5길	용현면	송저리 1194번지	송저리 1268번지	로	270	17	20	1-427	예곡부터 대발이 마을이 끝나는 구간으로서, 대발이 마을을 부여함	용현면	
8	대발당1길	대발당2길 대발당3길 대발당4길 대발당5길	용현면	송저리 1203번지	송저리 1223번지	길	225	8	10	1-445	대발당로를 중심으로, 대발당1길은 부여함	용현면	
9	대발당2길	대발당1길 대발당3길 대발당4길 대발당5길	용현면	송저리 1204번지	송저리 1249번지	길	215	8	10	1-443	대발당로를 중심으로, 대발당2길은 부여함	용현면	
10	대발당3길	대발당1길 대발당2길 대발당4길 대발당5길	용현면	송저리 1272번지	송저리 1216번지	길	465	8	10	1-483	대발당로를 중심으로, 대발당3길은 부여함	용현면	
11	대발당4길	대발당1길 대발당2길 대발당3길 대발당5길	용현면	송저리 1225번지	송저리 1265번지	길	175	13	10	1-465	대발당로를 중심으로, 대발당4길은 부여함	용현면	

사 건 시 험 보

제281호(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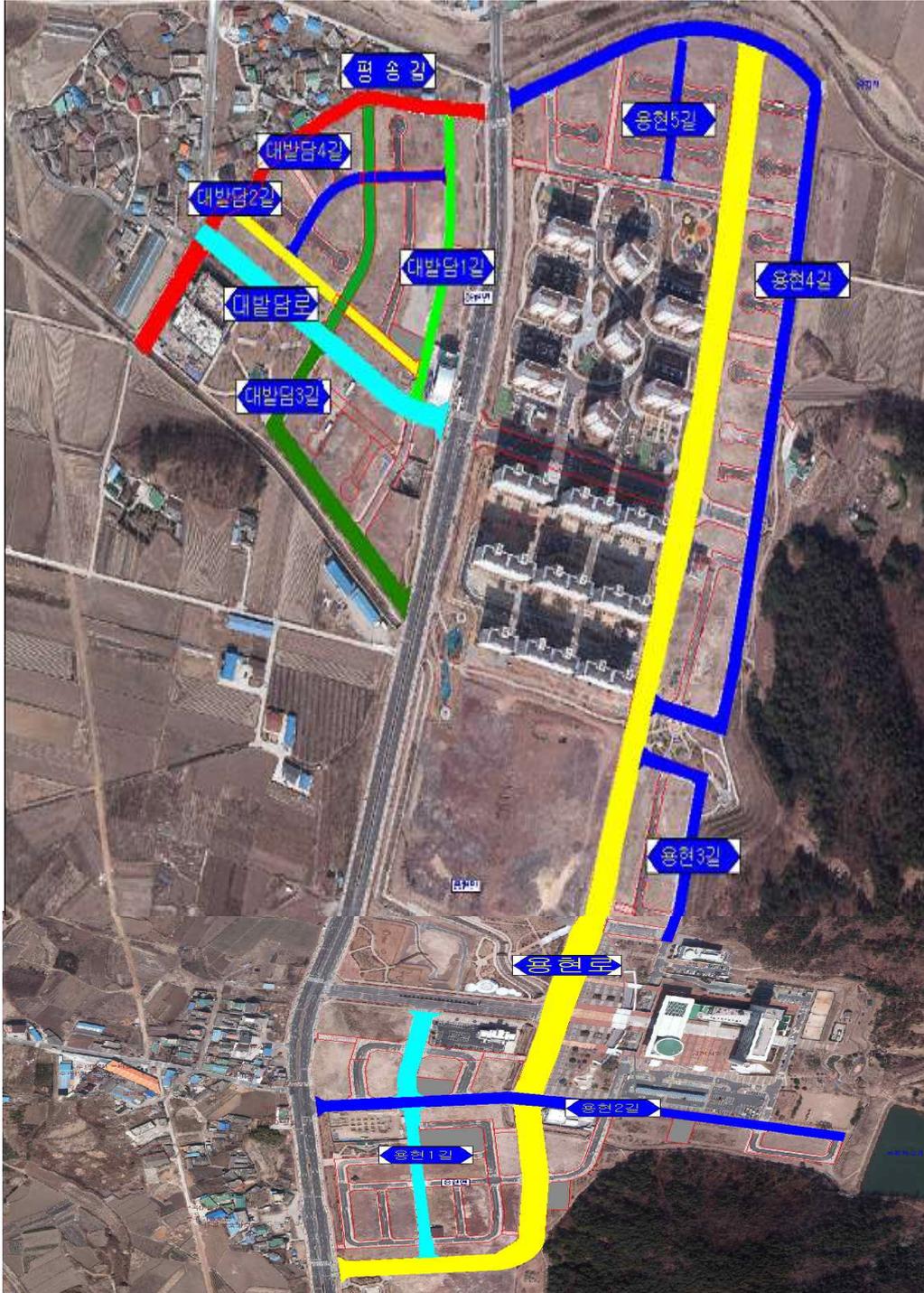
2.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조서

연 번	행정 구역	도로 위치	중심 선	기 존				변 경 안				비 고	
				도로명	유 사 도로명	기 점	종 점	부여사유	도로명	유 사 도로명	기 점		종 점
1	선구동	길	관련 도로면 참조	망산9길	망산2길 외	선구동 254-392	선구동 254-87	망산2길	망산2길 외	선구동 254-28	선구동 254-18	선구동 망산일대 지역을 일괄번호를 붙여 부여	변경
				망산9길	망산2길 외	선구동 254-18	선구동 254-302	망산2길	망산2길 외	선구동 254-28	선구동 254-18	선구동 망산일대 지역을 일괄번호를 붙여 부여	
3	선구동	길	관련 도로면 참조	망산9길	망산2길 외	선구동 254-8	선구동 30-2	한내5길	한내2길 외	선구동 254-8	선구동 254-118	상천포천을 선구동과 동등으로서 부르고있는 한내이름여서 따옴	폐지·변경
				망산9길	망산2길 외	선구동 254-8	선구동 30-2	망산9길	망산9길 외	선구동 254-118	선구동 254-190	선구동 망산공원으로 가는 길로 채육공원이 위치 하고 있음	
5	선구동	길	관련 도로면 참조	망산9길	망산2길 외	선구동 254-6	선구동 30-2	종암로	없음	선구동 254-190	선구동 30-2	* 가로명 조려 준용(종암로)	폐지·변경
				망산9길	망산2길 외	선구동 254-6	선구동 30-2	종암로	없음	선구동 254-190	선구동 30-2	* 가로명 조려 준용(종암로)	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8)

신설도로구간〔용현로, 용현1길~5길〕,〔대밭담로, 대밭담1길~4길〕



사 전 시 워 드

제281호(9)

1. 도로명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(망산2길)

도로구간 신설				비 고
도로명	기 점	종 점	변 경 사 유	
망산2길	선구동 26-392	선구동 26-87	도로구간 신설로 기존의 망산2길을 망산1길의 종속도로로 편입하고 신설구간을 망산2길로 부여	구간변경



사 전 시 위 면

제281호(10)

2. 도로명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도면(망산2길→망산1길 종속구간)

기 준		변 경			변 경 사 유
도로명	기 점	종 점	도로명	기 점	
망산2길	신구동 24-18	신구동 26-342	망산1길	신구동 24-28	신구동 26-18
기존의 망산2길을 망산1길의 종속구간으로 편입					

사 전 시 예 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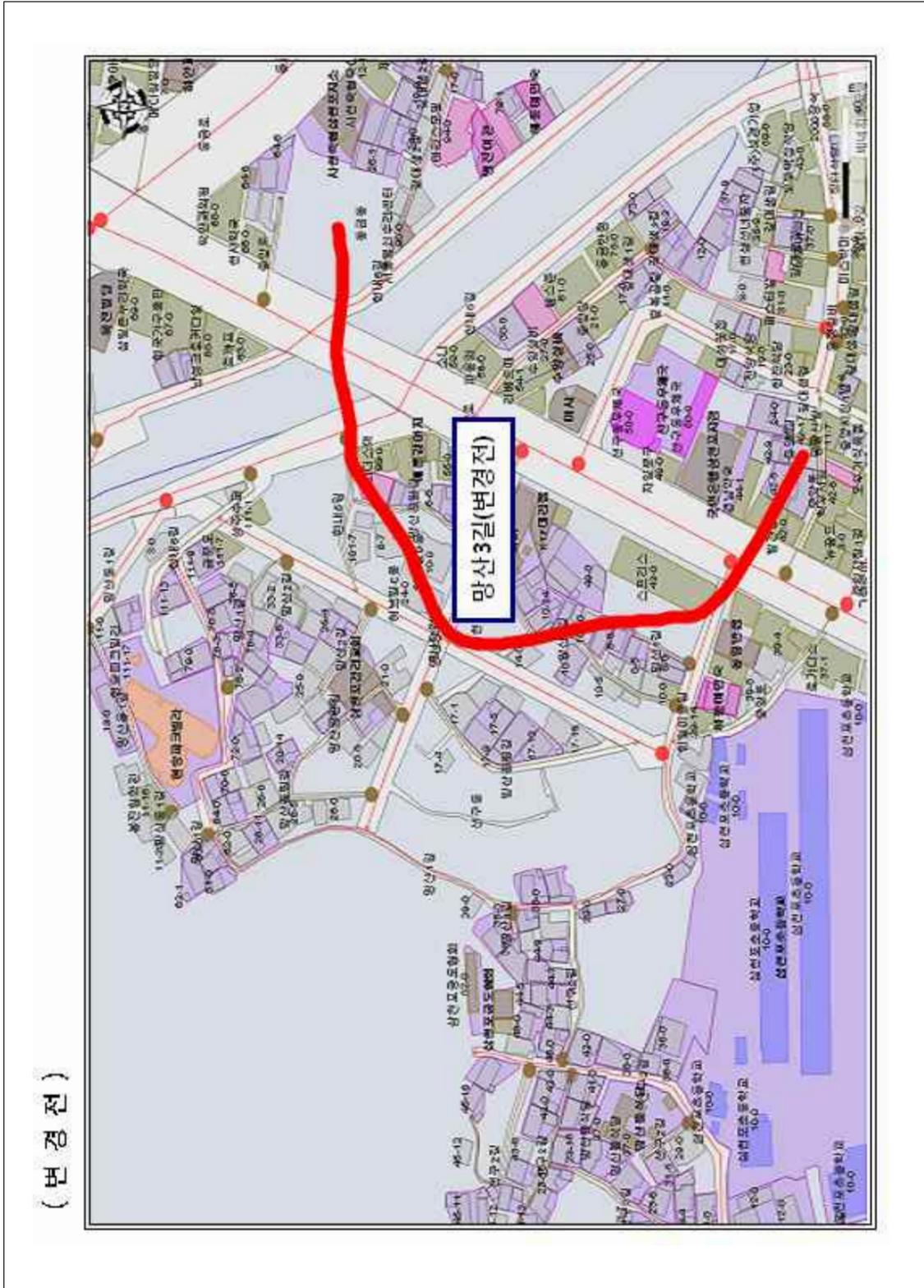
제281호(11)

3. 도로명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도면(망산3길폐자→한내5길망산공원길중앙로의 종속구간)

기 준		변 경			변 경 사 유
		도로명	도로명	종점	
망산3길	선구동 254-6	한내5길	선구동 254-6	선구동 26-116	망산3길(기점부분) 구간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절거되어 도로구간폐지하고 한내5길의 종속도로로 편입
망산3길	선구동 254-6	망산공원길	선구동 26-116	선구동 26-190	망산3길(중간부분) 구간 대부분의 건물이 절거되어 도로구간폐지하고 일부 남은 건물에 대하여 망산공원길의 종속도로로 편입
망산3길	선구동 254-6	중앙로	선구동 26-190	선구동 30-2	망산3길(중점부분)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로로 편입

사전시원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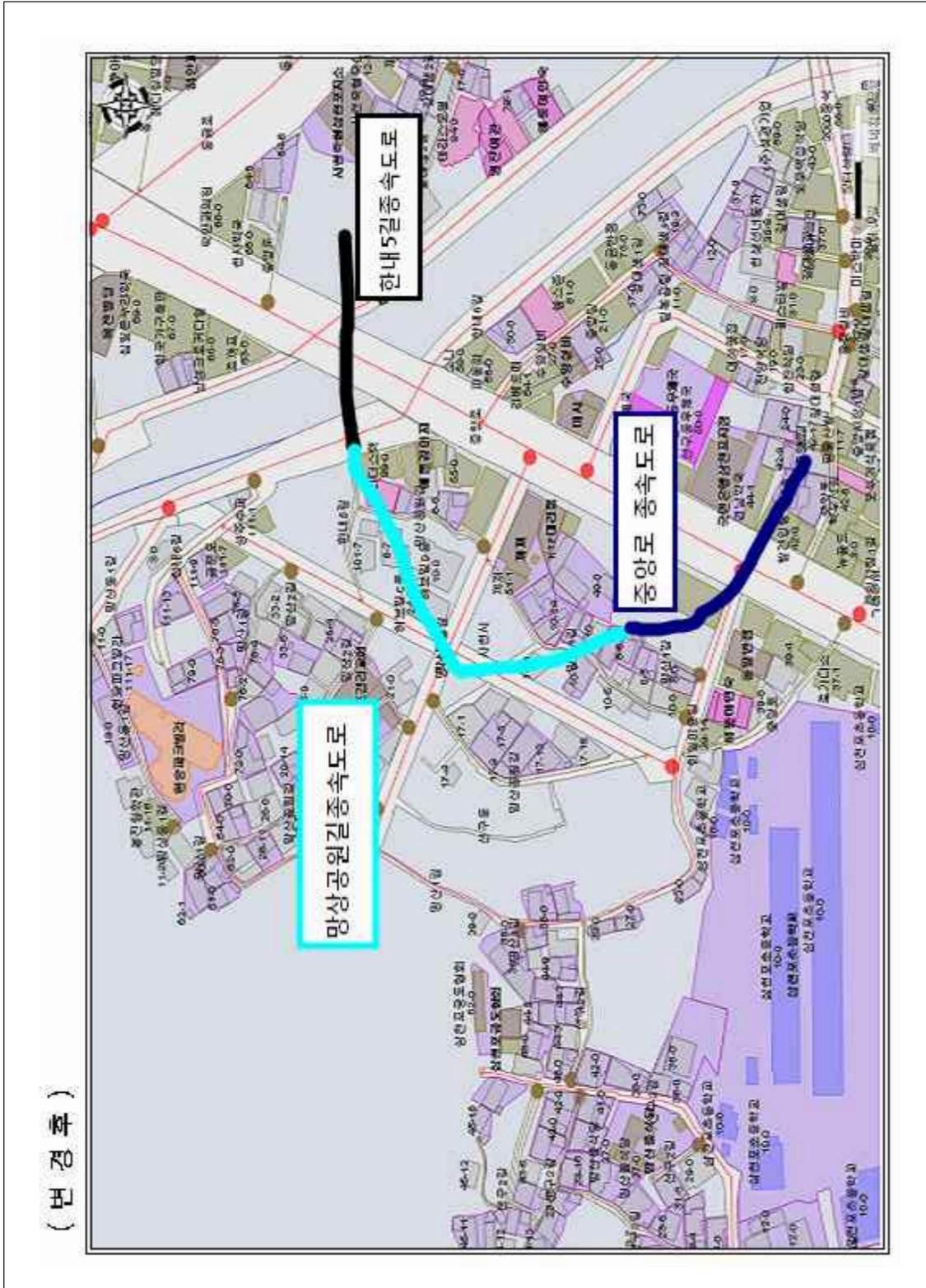
제281호(12)



(변경 전)

사전 시행면

제281호(13)



(변경후)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14)

사천시 고시 제2011-101호

공유수면매립 면허(협의·승인)사항 고시

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매립 면허(승인)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1. 8. 31.

사 천 시 장

1. 면허(협의·승인)번호 및 면허(협의·승인) 연월일

- 면허번호 : 제2011-1호
- 면허 연월일 : 2011년 8월 31일

2.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·성명

- 주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성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
3. 매립 목적

- 선착장 설치(2011년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)

4. 매립 위치와 면적

- 매립 위치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84-6번지선(선진항 지내)
- 매립 면적 : 603m²

5. 매립 공사의 기간

-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

6. 면허(협의·승인) 조건

- 불임과 같음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15)

공유수면매립 면허(협의·승인)조건

1.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협의 대상기관이 제시한 협의 의견을 반영한 후, 추진하여야 합니다.
2. 실시계획승인 신청 :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·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.
3. 매립공사의 시행 : 매립공사의 시행(공사의 착수 등)은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.
4. 본 사업은 상기 위치에 2011년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물양장 및 선착장을 조성하는 건입니다.
5. 본 사업이 소규모 매립이기는 하나 인근에 경관이 수려한 해상국립공원이 위치하고 각종 어패류 양식이 이루어지는 바,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방 및 저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·이행해야 합니다.
6. 구조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해안 지형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규모와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, 공사에 따른 부유사확산 영향정도와 범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Filter mat, 오탐방지막 등 저감시설을 적절하게 배치·운용 및 관리해야 할 것이며,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예측치 못한 상황발생 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.
7. 강우기 폭우 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침출수가 해역으로 직접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오염가중 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16)

8. 태풍, 파랑, 조차 등 외부 물리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, 환경친화적인 매립토의 공급 및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해야 합니다.
9. 공사 시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수적인 오염물질 등 주변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사전예방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적법하게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.
10. 선박 등으로부터 해상유류유출로 인하여 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, 유류방제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히 수립하여 운영하고, 긴급사고 시 사고유형별 대책을 마련하여 제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.
11. 관계기관과 주민 및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소지를 없애야 합니다.
12. 해안경관이 우수한 동측 임야지역은 원형보전 하여야 합니다.
13. 공사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수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막 설치,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실시, 적정 규격의 사석재를 사용하고 사석 투하시 흙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14. 해양생물의 산란기에는 가능한 공사를 지양하여 해양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.
15. 공사 시 공사장비 등에 의한 유류유출 등으로 인한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,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방제장비 및 약제 등 오염방제 장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.
16. 공사 시 비산먼지·소음·진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 야간공사 지양, 공사지역 주변에 살수 실시, 저소음·저진동 공법적용 등 저감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17. 동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어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에 필요한 각종 대책(어민과의 협의 등)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17)

18.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,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시(문화관광과)에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19.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공사 착공일까지 「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」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20.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등으로 인하여 임목폐기물(나무뿌리, 줄기 등)을 포함한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(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)까지 「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」를 하여야 합니다.
21. 제2차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22. 공공 시설물의 귀속 및 유지관리
 - 가. 본 매립공사 준공과 동시에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합니다.
 - 나. 바닷가 등의 처리 : 불법매립지는 국유화하며, 바닷가에 대하여는 피면허자 부담으로 실측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, 바닷가 상당의 면적은 준공 시, 집합 구획하여 국가에 귀속하되, 실시계획승인 시, 그 규모와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18)

사천시 고시 제2011-102호

공유수면매립 면허(협의·승인)사항 고시

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매립 면허(승인)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1. 8. 31.

사 천 시 장

1. 면허(협의·승인)번호 및 면허(협의·승인) 연월일

- 면허번호 : 제2011-2호
- 면허 연월일 : 2011년 8월 31일

2.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·성명

- 주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성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
3. 매립 목적

- 선착장 설치(2011년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)

4. 매립 위치와 면적

- 매립 위치 : 경남 사천시 마도동 151-11번지선(저도항 지내)
- 매립 면적 : 312m²

5. 매립 공사의 기간

-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

6. 면허(협의·승인) 조건

- 붙임과 같음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19)

공유수면매립 면허(협의·승인)조건

1.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협의 대상기관이 제시한 협의 의견을 반영한 후, 추진하여야 합니다.
2. 실시계획승인 신청 :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·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.
3. 매립공사의 시행 : 매립공사의 시행(공사의 착수 등)은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.
4. 본 사업은 상기 위치에 2011년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생산성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물양장 및 선착장을 조성하는 건입니다.
5. 본 사업이 소규모 매립이기는 하나 인근에 경관이 수려한 해상국립공원이 위치하고 각종 어패류 양식이 이루어지는 바,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방 및 저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·이행해야 합니다.
6. 구조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해안 지형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규모와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, 공사에 따른 부유사확산 영향정도와 범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Filter mat, 오탐방지막 등 저감시설을 적절하게 배치·운영 및 관리해야 할 것이며,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예측치 못한 상황발생 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.
7. 강우기 폭우 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침출수가 해역으로 직접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오염가중 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.
8. 태풍, 파랑, 조차 등 외부 물리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, 환경친화적인 매립토의 공급 및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해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20)

9. 공사 시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수적인 오염물질 등 주변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사전예방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적법하게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.
10. 선박 등으로부터 해상유류유출로 인하여 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, 유류방제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히 수립하여 운영하고, 긴급사고 시 사고유형별 대책을 마련하여 제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.
11. 관계기관과 주민 및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소지를 없애야 합니다.
12. 공사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수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막 설치,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실시, 적정 규격의 사석재를 사용하고 사석 투하시 흙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13. 해양생물의 산란기에는 가능한 공사를 지양하여 해양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.
14. 공사 시 공사장비 등에 의한 유류유출 등으로 인한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,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방제장비 및 약제 등 오염방제 장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.
15. 공사 시 비산먼지·소음·진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 야간공사 지양, 공사지역 주변에 살수설시, 저소음·저진동 공법적용 등 저감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16. 동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어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에 필요한 각종 대책(어민과의 협의 등)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17.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,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시(문화관광과)에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21)

18.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공사 착공 일까지 「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」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19.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등으로 인하여 임목폐기물(나무뿌리, 줄기 등)을 포함한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(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)까지 「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」를 하여야 합니다.
20. 제2차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21. 공공 시설물의 귀속 및 유지관리
 - 가. 본 매립공사 준공과 동시에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합니다.
 - 나. 바닷가 등의 처리 : 불법매립지는 국유화하며, 바닷가에 대하여는 피면허자 부담으로 실측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, 바닷가 상당의 면적은 준공 시, 집합 구획하여 국가에 귀속하되, 실시계획승인 시, 그 규모와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22)

사천시 고시 제2011-103호

공유수면매립 면허(협의·승인)사항 고시

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매립 면허(승인)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1. 8. 31.

사 천 시 장

1. 면허(협의·승인)번호 및 면허(협의·승인) 연월일

- 면허번호 : 제2011-3호
- 면허 연월일 : 2011년 8월 31일

2.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· 성명

- 주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성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
3. 매립 목적

- 물양장 설치(2011년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)

4. 매립 위치와 면적

- 매립 위치 :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5-209번지선(하봉항 지내)
- 매립 면적 : 783㎡

5. 매립 공사의 기간

-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

6. 면허(협의·승인) 조건

- 불임과 같음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23)

공유수면매립 면허(협의·승인)조건

1.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협의 대상기관이 제시한 협의 의견을 반영한 후, 추진하여야 합니다.
2. 실시계획승인 신청 :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·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.
3. 매립공사의 시행 : 매립공사의 시행(공사의 착수 등)은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.
4. 본 사업은 상기 위치에 2011년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생산성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물양장 및 선착장을 조성하는 건입니다.
5. 본 사업이 소규모 매립이기는 하나 인근에 경관이 수려한 해상국립공원이 위치하고 각종 어패류 양식이 이루어지는 바,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방 및 저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·이행해야 합니다.
6. 구조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해안 지형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규모와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, 공사에 따른 부유사확산 영향정도와 범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Filter mat, 오탐방지막 등 저감시설을 적절하게 배치·운용 및 관리해야 할 것이며,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예측치 못한 상황발생 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.
7. 강우기 폭우 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침출수가 해역으로 직접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오염가중 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.

사 전 시 공 보

제281호(24)

8. 태풍, 파랑, 조차 등 외부 물리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, 환경친화적인 매립토의 공급 및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해야 합니다.
9. 공사 시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수적인 오염물질 등 주변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사전예방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적법 하게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.
10. 선박 등으로부터 해상유류유출로 인하여 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, 유류방제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히 수립하여 운영하고, 긴급사고 시 사고유형별 대책을 마련하여 제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.
11. 관계기관과 주민 및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소지를 없애야 합니다.
12. 공사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수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탁방지 설치,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실시, 적정 규격의 사석재를 사용하고 사석 투하시 흙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 하는 등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13. 해양생물의 산란기에는 가능한 공사를 지양하여 해양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.
14. 공사 시 공사장비 등에 의한 유류유출 등으로 인한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,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방제장비 및 약제 등 오염방제 장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.
15. 공사 시 비산먼지·소음·진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 야간공사 지양, 공사지역 주변에 살수실시, 저소음·저진동 공법적용 등 저감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16. 동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어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에 필요한 각종 대책(어민과의 협의 등)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281호(25)

17.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,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시(문화관광과)에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18.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공사 착공일까지 「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」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19.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등으로 인하여 임목폐기물(나무뿌리, 줄기 등)을 포함한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(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)까지 「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」를 하여야 합니다.
20. 공공 시설물의 귀속 및 유지관리
 - 가. 본 매립공사 준공과 동시에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합니다.
 - 나. 바닷가 등의 처리 : 불법매립지는 국유화하며, 바닷가에 대하여는 피면허자 부담으로 실측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, 바닷가 상당의 면적은 준공 시, 집합 구획하여 국가에 귀속하되, 실시계획승인 시, 그 규모와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.